고령·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8월 일 발 의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 사유

○ 성주군·고령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제안 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158조

3. 주요 내용

○ 구 성

-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(성주 10명, 고령 10명)
- 회장은 자치단체장 (순번제로 역임), 회원에 기획감사실장, 해당 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
- 임기는 회장은 2년으로 1회 연임가능, 회원 2년으로 연임가능.
 (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)

○ 처리사무

-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
-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번영에 관한 사항
-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
- 기타 생활권 관련 제반사항

○ 회 의

- 정 족 수 :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회 의
 - 정기회 : 연2회(상·하반기 1회씩)
 - 임시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요구 시
 *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 가능

○ 실무협의회

- 회　원 : 기획감사실장 및 의안 관련 부서장
- 회　장 : 행정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
- 역　할 :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・보고

○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3. 12월 :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계획 수립
- 2014. 01월 : 생활권 구성(안) 제출(경북도→지역발전위)
- 2014. 02월 :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MOU체결(성주・고령)
 생활권 사업 발굴 제출(34건)
 ⇒ 선도 1건, 연계 13건, 단독 20건(성주 10, 고령 10)
- 2014. 05월 :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중(대구경북연구원)
- 2014. 09월 :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
 '15년 생활권사업 선정결과 최종 발표
- 2014. 10월 :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및 용역 완료

※ 생활권 사업(연계・단독) 지속 발굴 → 발전계획 포함

붙임　고령-성주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(안) 1부.

성주군 규약 제 호

고령·성주 농어촌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·성주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협의회의 명칭은 고령-성주 농어촌생활권 행정협의회(이하 '협의회' 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② 회원은 각 자치단체 해당 부서장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③ 회장은 고령군수, 성주군수 순으로 자치단체장이 순번으로 역임한다.

제4조(협의회 사무소)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.

제5조(회장의 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,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.
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③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처리사무)
1.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
2.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번영에 관한 사항
4.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
5. 기타 생활권 관련 제반사항

제8조(의안 및 정족수) ① 회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.
② 의안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회의)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, 상·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⑤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문위원) ① 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)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12조(간사와 서기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③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, 간사를 보좌한다.

제13조(의결사항 준수) 협의회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경비부담)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.
③ 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·지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사무인계)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② 실무협의회 회원은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.
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생활권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.
④ 실무협의회 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당지급)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실비지원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.

제18조(규약개정)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9조(보칙)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